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2954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11021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J이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545호로 공탁한 736,422,07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제1심판결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제1심판결의 피고 [redacted]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 D, 대한민국,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 제1심판결문 제4면 7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의 "피고 B"를 "B"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피고 대한민국"를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로,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G 주식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H"로,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I"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하1행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피고들 및 B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의 표 아래 1행부터 5행까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4행부터 7행까지("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 이유 없다."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계약 내용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조세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J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에는 B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redacted]구는 위 주장 외에도 채무자인 B와 수탁자인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법리는 신탁법상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redacted]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redacted]구는, 원고와 J이 위탁자인 B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의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redacted]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19행의 "우선수이갖의"을 "우선수익자의"로 고친다.

3.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